

[예 규]

◆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25호

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

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」 일부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 신 원 철 

2018년 10월 4일

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” 을 “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세칙” 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정책연구위원회” 를 각각 “정책위원회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” 를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” 로, “정책연구위원회” 를 “정책위원회” 로 한다.

제4조제3항 본문 중 “3일전까지회의안건” 을 “3일 전까지 회의안건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정책연구위원” 을 “위원회 위원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정책연구위원증” 을 “정책위원회 위원증” 으로 한다.

별지 서식 중 (전면)의 “정책연구위원증” 을 “정책위원회 위원증” 으로 한다.

별지 서식 중 (후면)의 “정책연구위원회” 을 “정책위원회” 로, “정책연구위원” 을 “정책위원회 위원” 으로, “☎ 3705-1169” 를 “☎ 2180-7902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</u>	<u>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세칙</u>
<p>제1조(목적) 이 운영세칙은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<u>정책연구위원회</u>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해축)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5조중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한 해축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의회 <u>정책연구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소위원회 회의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소위원장이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<u>3일전까지회의안건</u>,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통신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제7조(의견 제출 및 안건 발의)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정책연구위원, 공무원 및 시민 등은 의정 및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정책연구과제 및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8조(위원증 발부) ① 서울특별시의회는 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<u>정책연구위원증</u>(이하 "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<u>정책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<u>정책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해축) 「서울특별시의회 <u>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</u> <u>조례</u>」 ----- ----- <u>정책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제4조(소위원회 회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3일</u> <u>전까지 회의안건</u>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의견 제출 및 안건 발의) ①----- -----<u>위원회 위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위원증 발부) ①----- ----- <u>정책위원회 위원증</u>-----</p>

위원증"이라 한다)을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[별지 서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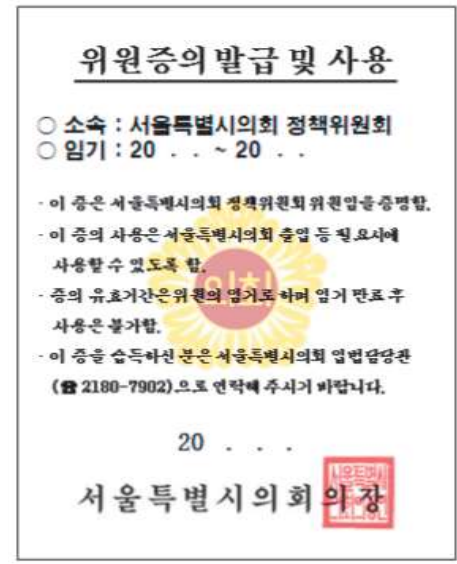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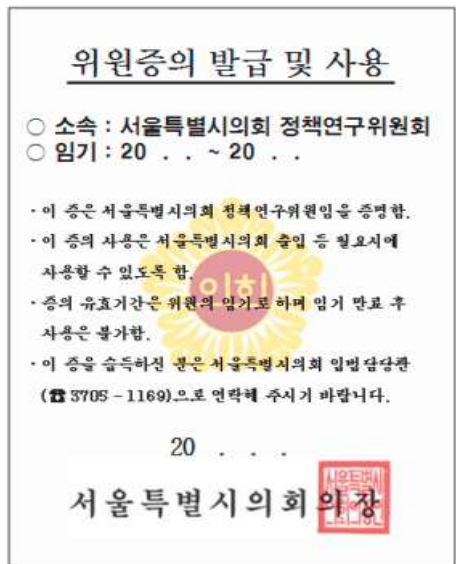
(전면)



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

(후면)

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-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의 일부개정(2018.1.4.)으로 ‘정책연구위원회’를 ‘정책위원회’로 명칭이 변경됨
- 이에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」을 개정하여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‘정책연구위원회’를 ‘정책연구회’로 변경함(법규명, 안 제1조, 제2조, 제7조, 제8조, 별지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없음

◆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26호

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「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인
2018년 10월 4일

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세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자격기준) 위원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(행정자치부예규)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조건 5급 이상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	제4조(자격기준)----- ----- ----- ----- (행정안전부예규)----- -----.
제6조(경비 등의 지급) 전문가에 대해 지급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, 지급범위 산정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」을 준용한다.	제6조(경비 등의 지급)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세칙」을 준용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-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가 일부개정(2018. 1. 4 시행)됨에 따라 규정 내용 중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」을 「서울특별시 정책위원회 운영세칙」으로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세칙을 서울특별시 정책위원회 운영세칙으로 함 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없음